

제 1452 호  
1989. 10.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공 보 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 ~ 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2506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 규 칙		
제 343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증개정규칙	3
제 2299 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20
● 훈 령		
제 682 호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의운영규정	26
● 업무규정		
	서울특별시가락동청과부, 수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	27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고 시

제244호	소음규제지역지정및소음규제기준	37
제441호	사료성분등록처리	39
제443호	최고기연동가격고시	39
제450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인가	39
제454호	도시계획사업(지하철도, 부대시설)시행허가변경	40

●공 고

제836호	품질관리등급사정취소	46
제837호	품질관리등급표시정지처분	46
제838호	KS표시허가취소	46
제8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47
제854호	전기공사업면허실효	47

●구 고 시

제 1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7
제 1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8
제 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준공	48
제 86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48
제 9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49
제38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0

●구 공 고

제 5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50
제 5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51
제 84 호	불법공산품판매및진열금지공고	51
제100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52
제107호	관인개각사용	53
제17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54
제17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공람공고	54
제17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55

●사업소고시

제 31 호	선박운항허가	55
제 32 호	하천의점용허가	55
제 33 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56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0.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인

◎서울특별시조례제2506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국민학교(부부)중 서울창경국 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중원국민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서울중원국민학교	노원구 하계동30-2
----	----------	-------------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인사사무 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0.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인

◎교육규칙제34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인사사무 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인사사무 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을 "지방연구및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연

구·지도및의료직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 으로 한다.

제2조중 "임용 및 시험"을 "임용·시험· 승진"으로 한다.

제5조중 "교육감"을 "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의사, 연구·지도및의료직규 정(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약사 및 [별표2의5]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삭제하고, [표]의 의사·약사 및 간호사란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 치구 교육장은 사전에 시·도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실시) ①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 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 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 부분은 심신장애자만이 응실할 수 있도 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 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 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 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별표4의4"를 "별표4 및 별표4의2"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을 "와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제1호중 "시·도교육감"을 "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중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을 "와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공무원"으로 동조 제1항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의료직공무원(연구·지도 및의료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이, 동조 제2항중 "과 의료직공무원"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등) ① 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학력구분표(제9조관련)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경력외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 일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하며"를 "훈련성적에 대하여 평정하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제2항으로 하고, 동호중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인 경우"로 하며,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를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호중 "교육감"을 "시·도교육장"으로하고, 동항 제5호중 "교육장(교육구청장)"을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직업		직급	7 급 이 상	8 급 · 9 급																																					
기계	일반기계		기계계통의 학과를 이수한 자	기계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운전		자	업자																																					
전기	일반전기		전기계통의 학과를 이수한 자	전기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전		자	업자																																					
	원자력																																								
화공	일반화공		화공계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수산	일반수산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이수한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수산지도																																								
	수산물																																								
	검사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표중 5급이상의 응시학력은 4년제대학 및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제3학년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제3학년의 제1학년까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3학년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li> <li>2. 위표중 6~7급의 응시학력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졸업자 및 동졸예정자(최종학력의 제1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한다)4년제 대학 제2학년 수료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li> <li>3. 위의 1 및 2의 학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li> </ol> <p>[별표4]의 제1호의 사서직렬란 및 수의 다음에 의무직렬란 약무직렬란 및 간호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수의직렬란 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서</th> <th>사 서</th> <th>1 급 정 사 서</th> <th>2 급 정 사 서</th> <th>은 사 서</th> </tr> </thead> <tbody> <tr> <td>수 의</td> <td>수 의</td> <td>수의사</td> <td>수의사</td> <td>가족인공수정사</td> </tr> <tr> <td rowspan="3">의 무</td> <td>일 반 의 무</td> <td>의사, 한의사</td> <td></td> <td></td> </tr> <tr> <td>치 부</td> <td>치과의사</td> <td></td> <td></td> </tr> <tr> <td>의 료 기 기</td> <td>의사, 한의사, 치과의사</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약 무</td> <td>약 무</td> <td>약사</td> <td>약사</td> <td></td> </tr> <tr> <td>약 제</td> <td>약사</td> <td>약사</td> <td></td> </tr> <tr> <td>간 호</td> <td>간 호</td> <td>조산사, 간호사</td> <td>조산사, 간호사</td> <td>조산사, 간호사</td> </tr> </tbody> </table>					사 서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은 사 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의 무	일 반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부	치과의사			의 료 기 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약사		약 제	약사	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사 서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은 사 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의 무	일 반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부	치과의사																																							
	의 료 기 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약사																																						
	약 제	약사	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별표4]의 제2호 제목중 "특별임용시험"의 용시자격구분표"를 "특별임용시험의 용시자격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사서직렬란 및 수		의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수의직렬란 다음에 의무직렬란·약무직렬란 및 간호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준 사 서
수 의	수 의	수의사(5)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의 무	일 반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과 의 무	치과의사		
	의 료 기 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5)	약사	
	약 제	약사(5)	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8), 간호사(8)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별표4의2] 제목중 "(제22조의2 제1항 관련)"를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을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하며, 제2호의 축산직렬란, 보건직렬란 및 환경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축 산	축 산	수 의 사(5)	수 의 사	가족인공수정사
보 건	보 건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5) 약 사(5) 작업치료사(8)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위생사1급(6) 위생시험사1급(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4) 간호사(8) 조산사(8)	수의사 약 사 작업치료사(2)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3), 간호사(2) 의무기특사(2), 조산사(2)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의무기특사, 영양사

관	경	의사		
	환	약사(5)	약사	
		수의사(5)	수의사	위생사2급
		위생사1급(6)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2급
		위생시험사1급(6)	위생시험사1급	

[별표4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의3]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표  
(제20조제2항 관련)

직명	직류	등급 분류	등급			
			5 등 급	6 · 7 등 급	8 · 9 등 급	10 등 급
철도 연입도 연입도	철도 연입도 연입도	기계	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1급 궤화차정비 기능사1급 열차조작기능사 1급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2급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2급 궤화차정비기능사 2급 열차조작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계량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 3종지게차조종사 면허증 열관리기능사2급 가중기운전기능사 2급	철도동력차기관 정비기능사보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보 궤화차정비기능사 보
		전기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사2급 전기공사기사3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사기능사 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전력설비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사2급 신호보안기능사 1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 사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동력배선기능사보
	통신	유선설비기능장	유선설비기사2급 무선설비기사2급  유선통신기계기능 사1급 방송기기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1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기능 사2급 방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기능 사보	
	토목			보선기능사1급 측량기능사1급	보선기능사2급 측량기능사2급	보선기능사보
	건축	건축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기사2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1급  조적기능사1급  창호제작기능사 1급 은돌기능사1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2급  조적기능사2급  창호제작기능사 2급 은돌기능사2급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보 은돌기능사보	
	환경	관리		환경기사2급		



직렬	직류	등급	등급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토 목	토 목	토목계도기능장 측량기능장 토목재료시험 기능장 콘크리트기능장	토목기사2급	토목기사2급		
			측량기사2급	토목재료시험기사 2급		
			토목재료시험기사 1급	토목재료시험기사 2급	토목재료시험기사 2급	
			측량기사1급	측량기사2급	측량기사2급	
			토목계도기능사1급	토목계도기능사 2급	토목계도기능사 2급	
			포장기사1급	포장기사2급	포장기사2급	포장기사보
			콘크리트기능사1급	콘크리트기능사 2급	콘크리트기능사 2급	콘크리트기능사보
			도화기사1급	도화기사2급		
			항공사진기사1급	항공사진기사2급	항공사진기사2급	
			지도제작기사1급	지도제작기사2급	지도제작기사2급	
			화학분석기사1급	화학분석기사2급	화학분석기사2급	
			석공기사1급	석공기사2급	석공기사2급	석공기사보
			석공예기능사1급	석공예기능사2급	석공예기능사2급	석공예기능사보
건 축	건 축	건축계도기능장  건축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기사2급	건축기사2급		
			조정기사1급	조정기사1급		
			창호제작기사 1급	창호제작기사 2급	창호제작기사 2급	창호제작기사보
			온돌기사1급	온돌기사2급	온돌기사2급	온돌기사보
				조적기사2급	조적기사2급	조적기사보
				건축재료시험 기능사2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2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보
			건축계도기능사1급	건축계도기능사2급	건축계도기능사2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2급	건축도장기능사2급	건축도장기능사보
				건축목공기능사2급	건축목공기능사2급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사1급	미장기사2급	미장기사2급	미장기사보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가구도장기능사 1급 광고도장기능사 1급 목공예기능사1급 가구제작기능사1급 나전칠기기능사1급	가구도장기능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목공예기능사2급 가구제작기능사2급 나전칠기기능사2급	가구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보 목공예기능사보 가구제작기능사보 나전칠기기능사보
	배관			배관기능사1급	배관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통신	통신		유선설비기능장  1급통신사	유선설비기사2급 무선설비기사2급 전파통신기사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1급 반송기기기능사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1급 2급통신사  유선통신선로 기 능사1급	무선설비기능사2급 전파통신기능사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2급 반송기기기능사2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전화교환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기능 사2급 유선통신선로기능 사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음향영상기기기능 사보 유선통신선로기능 사보 유선통신기계기능 시보
교환	교환				전화교환기능사 2급	
전기	전기			전기기사2급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보
			전기공사기능장	전력설비기능사 1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기 계	기 계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기사2급		
			금형공구기능장	건설기계기사2급		
			기계정비기능장	소방설비기사2급		
			판금기능장		열관리기능사2급	
			배관기능장	공기조화및냉동기 제기사2급		
			용접기능장			
			제관기능장	중기정비기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장	산업안전기사2급		
			풍기정비기능장	계량기사2급	계량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장	자동차점사기사 2급		
			원동기기능장	원동기취급기능사 1급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금형공구기능사 1급	금형공구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보
					배관기능사2급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기계	기계			기계제도기능사1급 용접기능사1급  기계가공기능사 2급 밀링기능사1급 기계조립기능사 1급  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1급 고압가스취급기능 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  재판기능사1급 판금기능사1급 중기정비기능사 1급	기계제도기능사2급 전기용접기능사2급 가스용접전기기능 사2급 특수용접기능사 2급 용접기능사2급 선반기능사2급 기계가공기능사 2급 밀링기능사2급 기계조립기능사 2급 다듬질기능사2급 정밀측정기능사 2급 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2급 고압가스취급기능 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공기조화기능사 2급 재판기능사2급 일반판금기능사2급 중기정비기능사 2급	전기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특수용접기능사보 선반기능사보 밀링기능사보 다듬질기능사보 자동차차기판기능사 보 자동차세시기능사 보 자동차전기 기능사 보 재판기능사보 일반판금기능사보 중기차체정비기능 사보 중기기관정비기능 사보

구분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기계	기계				불도저운전기농사 2급 굴삭기운전기농사 2급 로우더운전기농사 2급 스크레이퍼운전기 농사2급 가중기운전기농사 2급 덤프트럭운전기사 2급 콘크리트믹서운전 기농사2급 제직기농사1급 농기계정비기농사 1급 제직기 농사2급 농기계정비기농사 2급 농기계운전기농사 2급 모우터그레이더운 전기농사2급 로울러운전기농사 2급 지게차운전기농사 2급 아스팔트휘니셔운 전기농사2급 아스팔트믹싱프렌 트운전기농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 농사2급 사리채취기운전기 농사2급 천경기중기운전기 농사2급	제직기농사1급 농기계정비기농사 1급	제직기농사2급 농기계정비기농사 2급 농기계운전기농사 2급 모우터그레이더운 전기농사2급 로울러운전기농사 2급 지게차운전기농사 2급 아스팔트휘니셔운 전기농사2급 아스팔트믹싱프렌 트운전기농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 농사2급 사리채취기운전기 농사2급 천경기중기운전기 농사2급	농기조정기농사보 농기계운전기농 사보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기계	기계			고압가스기계기사2급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열처리기능사1급 영사기능사1급 인쇄기능사1급 유희제판기능사1급 제판기능사1급 인쇄사진기능사1급 사진기능사1급	중설전문전기기사2급 해석기운전기기사2급 고압가스기계기사2급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열처리기능사2급 영사기능사2급 문선식자기기사2급 인쇄기능사2급 유희제판기능사2급 제판기능사2급 인쇄사진기능사2급 보도사진기능사2급 제작기능사2급	문선식자기기사보 인쇄기사보 유희제판기능사보 제판기능사보 인쇄사진기능사보 보도사진기능사보 제작기능사보
난방	난방			열관리기능사1급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기계기사1급 배관기능사1급	열관리기능사2급 원동기취급기능사2급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고압가스기계기사2급 배관기능사2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 제2종운전면허	
파공	파공			화학분석기능사1급	화학분석기능사2급	

직렬	직류	등급 분야	등급			
			5 등 급	6 · 7 등 급	8 · 9 등 급	10 등 급
화 공	화 공		화공기사1급 환경기사1급	화공기계기능사1급 화공기사2급 환경기사2급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화학분석기능사1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	화공기계기능사2급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화학분석기능사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선 박	선 박		1급향해사	2급향해사 3급향해사	4급향해사 5급향해사	6급향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1급기관사	2급기관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 립 원 예	영 립 원 예			영림기능사1급 원예종묘기능사1급 임업종묘기능사1급 조원기능사1급	영림기능사2급 원예종묘기능사2급 임업종묘기능사2급 조원기능사2급 화훼재배기능사2급	경림기능사보 원예종묘기능사보 임업종묘기능사보 조원기능사보 화훼재배기능사보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1급(3)	위생사2급	조리사2급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위 생	위 생			위생시험사1급(3) 영양사(3)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조리사1급		
	사역			영양사(3)	영양사 조리사1급 오물처리사1급	조리사2급 오물처리사2급	
사 무 보 조	조 무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주산1급 부기1급 한글속기2급 영문속기2급	자료입력기능사보 한글타자2·3급 영문타자2·3급 주산2·3급 부기2·3급 한글속기3급 영문속기3급	
	타 자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한글타자2·3급 영문타자2·3급 자료입력기능사보	
	전 산			전자계산기기능사 1급 공업계측제어기능 사1급 정보처리기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계산기기능사 2급 공업계측제어기능 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전자계산기기능사보 자료입력기능사보 공업계측제어기능 사보	
	계 리				주산1급 부기1급	주산2·3급 부기2·3급	
	사 서			1급정사서(5)	2급정사서	준사서	준사서
	<p>비고: ①윗표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②( )안의 숫자는 해당등급에 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                  ③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7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후 1년6월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별표 4의 4] 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를 삭제한다.  
 [별표 6]중 임용예정계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군인의 8급·기능직 8등급란중 "상사·중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중사"로 한다.

임용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예정	지도관	지도관	지도관	지도관	기능직 6 등급	기능직 7 등급	기능직	기능직
계급					이상, 지도사	· 지도사	8등급	9등급

[별표 9]중 임용예정계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								
예정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급								

[별표 10]중 사서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준 사 서
---	---	-----------	-----------	-------

[별표 14]중 군인의 8급·기능직 8등급란중 "상사·중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중사"로 한다.

[별표 16]중 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하단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	급	연구 직	지도 직
---	---	------	------

비고: [별표 2], [별표 2의 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지 제 8호 서식], [별지 제 19호 서식], [별지 제 20호 서식] 및 [별지 제 4호 서식]중 본직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 30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 3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소속	
직급	
성명	
현재급임용일	

구분		직	급	기간
공무	갑	경력		-
	을	경력		-
	병	경력		-
	정	경력		-
	정	휴직기간		-
	정	직위보상기간		-
정	정계처분기간		-	

평정대상 경력	평정점	평정일		재직수		평정점		재직수		평정점		재직수		평정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갑	최근6년														
갑	이전4년														
을	최근6년														
을	이전4년														
병	경력														
정	경력														
총	평정점														
평정	기간	관	명												
		직	위												
기	평정자	성	명												
		남	인												
판	확인자	직	위												
		성	명												
		남	인												

교육훈련과점	교육기간	훈련성적	평정점

종류	수여일	평정점
포상		
가점		
점		

복수지 근정 가점	근무기간	근무기간(월)	일평정점	평정점

자격증 가점	종류	취득일	평정점

비고: 평정대상공무원이 평정기간을 달리하여 전보될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함.

(부면)

행정대장부	구분	연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간경면	최근6년																
	이전4년																
율성면	최근6년																
	이전4년																
행정면																	
정경면																	
총괄정점																	
평가	기관명	직위															
		성명															
	확인자	직위															
		성명															

제1452호 시 보 1989.10.20 82-19

15011-04211일  
1989. 3. 22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복합)12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9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할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할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달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계급의 당해년도 3월달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달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계급의 당해 년도의 9월달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5조(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는 이 규칙의 개정규칙중 "시·도의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군의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0. 17

서울특별시장 고건

●서울특별시규칙제2299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  
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  
는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  
인수한다.  
제17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

건명 :							계	주관 계장	주관 과장	국장	부 시장	시장
계	항	세 항	세 세 항	목								

아래와 같이 {매입  
수리  
제조} 하고자 합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 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명칭	수량	소요경비 추정액	용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  
수리  
제조}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정리관 귀하

- 주: 1. 이 서식은 별도폼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 기증자	주소					
	성명			직업		
2. 기증품	품목	단위	규격	수량	금액	
3. 기증목적						
4. 사용용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위와 같이 (기증)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①

수령기관의 장:

②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제11호서식]										
<b>물 품 ( 관리 전환 ) 합 의 서</b>										
① ( )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명			③ 소관기관명			④ 회계명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수량	⑩ 금액	⑪ 물품의 상태		⑫ 비고	
⑬ ( 관리 전환 ) 의 조건										
⑭ ( 관리 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 계 자 :			시장							⑮
			물품관리관 직·성명							⑯
			물품출납원 직·성명							⑰
⑱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⑲ 지방자치단체명			⑳ 소관기관명			㉑ 회계명				
⑲ ( ) 받은 후		㉒ 물품의 분류								
		㉓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 계 자 :			인수관서의 장							㉔
			물품관리관 직·성명							㉕
			물품출납원 직·성명							㉖
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계인

카: 드	
등록번호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감지 전면)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②품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 정)분류		⑥정수	⑦내용 연수	⑧물 품 출납원②	⑨물 품 관리원③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⑬ 수입 (수량 / 금액)	⑭ 출급 (수량 / 금액)	⑮ 재고 (수량 / 금액)	⑯ 운용 (수량 / 금액)	⑰ 물품 출납 원 ④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⑬ 수입 (수량 / 금액)	⑭ 출급 (수량 / 금액)	⑮ 재고 (수량 / 금액)	⑯ 운용 (수량 / 금액)	⑰ 물품 출납 원 ④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0mm x 344mm (화일지노랑색)





**비품출납 및 운동카드(갑지) 기재요령**

- ①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②품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③규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④단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⑤회계: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정수: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 ⑦내용연수: 품종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 ⑧물품출납일: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⑨물품관리관: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⑩년월일: 생략
  - ⑪정리구분: 품종관리조해 별표2의 정리구분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⑫평가: 생략
  - ⑬주인: 생략
  - ⑭출급: 생략
  - ⑮재고(수량/금액):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⑯운용(수량/금액):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⑰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의 사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이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움직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9. 10. 17

서울특별시장 고 건 령

◎서울특별시훈령제682호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사정평가와 이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2. 사정업무의 추진방향
- 3. 부조리 예방을 위한대책
- 4. 기타 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의수렴을 위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p>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관</li> <li>2. 내무국장</li> <li>3. 시정연구원</li> <li>4. 종로구청장</li> </ol> <p>⑤위촉직 위원은 사정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계의 교수</li> <li>2. 법조계의 변호사</li> <li>3. 언론계의 언론중사자</li> <li>4. 시업부와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li> </ol>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년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p> <p>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회 3일전에 미리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p> <p>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외라지 아니하다.</p> <p>제8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이 당해직원에서 타직</li> </ol>	<p>위로 임용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위촉직 위원이 그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임기중 사망한 경우</li> </ol> <p>②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li> <li>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제9조(간사및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총괄계장이 된다.</p> <p>제10조(소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장, 시장개발담당관으로 하며 필요시 업무관련 관계과장을 참석시킬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출석및 사정업무와 관련된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또는 여비등을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p> <p>부 칙</p> <p>이 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b>업 무 규 정</b></p> </div> <p>서울특별시가각동청과부,수산부도메시장 업 무 규 정 중 개 정 규 정</p> <p>(1989. 9. 27 농림수산부 승인) 서울특별시 가각동 청과부, 수산부도메시장</p>
---	--

<p>업무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증 "청과부 수산부"를 "농수산물종합"으로 개정한다.                  제2조증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허가추천과, 영업정지, 취소의 건의                  제7조(지정도매인의 지정 신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p>
명칭	위치	면적		비고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543,600㎡	252,226㎡	<p>제11조 제1항중 "시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12조(지정도매인의 장부비치 및 보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정도매인은 전항 5호의 장부중 일별, 품목별 반입량, 거래물량, 거래액,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매사의 승인) 조문 제4항 "경매사의 승인"을 "경매사의 승인등"으로 하고 제2항중 "시장"을 "사장"으로 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정도매인이 병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경매사에 임면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매사 승인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도매인은 그 소속 경매사중에서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그 해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해임의 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경매사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정도매인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장은 이종 허가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경매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조 제1항중 "다음의 날"을 "다음 각호의 날"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과분류: 매월 첫째 일요일, 신청(3일간), 설날(3일간), 추석(3일간)                  2. 수산분류: 매월 첫째, 셋째일요일, 신청(3일간), 설날(3일간), 추석(3일간)                  제5조의 2항중 "시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도매시장관리공사"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4.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6.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 및 보급                  7.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편의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                  8. 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중매업의</p>				

제13조의2(매매참가인의 등록등) ①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매시장에서 도매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매매 참가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매참가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때에는 사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지정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때
2. 매수대금, 기타 채무이행을 태만히 한때
3. 기타 법령,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제14조(증대인의보증금 관리)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증대인이 지정도매인에게 납부한 거래보증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증대인의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정도매인은 증대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도매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매매방법의 예외) 조문 제목을 (매매방

법등)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다만, 지정도매인이 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산으로 도매거래를 한때나 수의 또는 정가매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품목별 경매장소) 본문중 "품목별 별표 제1호에 지정하는 품목은 트랙단외 경매장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도른 품목은 사장이 지정하는 품목별 경매장소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수탁판매의 예외)를 "삭제"한다.

제18조(수수료 징수) 본문중 "중매수수료"를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로 한다.

제19조(시장사용료의 납부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사용료는 부류별로 지정도매인의 거래금액과 대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배분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면적 기준 도매시장사용료는 각 지정도매인의 시장사용료를 합한 총 사용료의 2분의1을 각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
2. 총 사용료의 1/2은 거래금액 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
3.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이 사용하는 시설은 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 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본문중 "시장"을 "사장"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 . .부터 시행한다.

<개 정 안 서 식>

(별지제1호서식)

경매사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지정	법인명			주소		
도매인	대표자명			주소		
경매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경매사를 임명하고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  
무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명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자필이력서 1부.
  4. 경매사 자격증사본 1부.
  5. 신채접사서 1부.
  6. 반명함판 사진 2매.

(별지제2호서식)

경매사태업무종사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주 시

신청인	주소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경매사태업무종사허가	기간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서울특별시 \_\_\_\_\_ 부류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경유

년 월 일

지정도매인 ㉞

법인명, 대표가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귀하 ㉞

구비서류 1. 재직증명원 1통.

(별지제3서식)

경매사태업무종사허가증

주 소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타입무종사허가기간				
타입무종사허가업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가  
 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별지제4호차시)

## 매매참가인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인	주소				
	상호				
	대표자명 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참가자 성명 (법인인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가 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제 호			
거래가공조리 또는구입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  
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②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실적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매매참가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반명합판 사진 2매.

(별지제5호서식)

매매참가인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명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가자 성명 (법인인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가 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가공조리 또는구입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매매참가인 등록증사본 1부.

2. 변경사항 증빙자료 1부.

(별지제6호서식)				
<b>매 매 참 가 인 등 록 증</b>				
주 소				
상 호				
대표자명 또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참가자 성 명  (법인인경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 가 시 장 명				
거 래 가 공 조 리 또는 구 입 품 목				
사업자등록번호				
등 록 일 자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가 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 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①</p>				
* 변경등록시에도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정가, 수의 또는 자기 계산 매매보고서

도매시장명						
지정도매법인명 대표자명						
일 자	19 . . . . .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 하자	배 수 자	

판매사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가락동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외거 정가매매, 수의매매 또는 자기계산매매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8 . . . . .

지정도매인

법 인 명
대 표 자 명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귀하

(별지제6호서식)				
<b>매 매 참 가 인 등 록 증</b>				
주 소				
상 호				
대표자명 또는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참가자 성 명  (법인인경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 가 시 장 명				
거 래 가 공 조 리 또는 구 입 품 목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가 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 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②</p>				
* 변경등록시에도 같음.				

(별지제7호서식)

정가, 수의 또는 자기 계산 매매보고서

도매시장명						
지정도매법인명 대표자명						
일자	19 . . . . .					
품목	단위	수량	금액	출하자	매수자	
<p>관매사유</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가락동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 수의매매 또는 자기계산매매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 . . . .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법인명</p> <hr/> <p>대표자명</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지정도매인</p> <p>①</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귀하</p>						

(별지제6호서식)				
<b>매매참가인등록증</b>				
주 소				
상 호				
대표자명 또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참가자 성 명  (법인인경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참가 시장명				
거래가공조리 또는 구입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일자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가 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외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 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㉞</p>				
* 변경등록시에도 적용.				

(별지제7호서식)

점가, 수의 또는 자기 계산 매매보고서

도매시장명						
지정도매법인명 대표자명						
일자	19 . . . . .					
품목	단위	수량	금액	출하자	매수자	

관매사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가락동 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  
가매매, 수의매매 또는 자기계산매매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8 . . . . .

지정도매인

법인명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귀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44호

소음규제지역지침 및 소음규제기준

1. 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1989. 10. 11

서울특별시

[ 다 음 ]

가. 소음규제지역

지 역	위 치	면 적 ㎡ (평)
양문동 주택조성단지 주변일대	도봉구 양문동 239	691,000(209,393)
중계동공도서관 주변일대	노원구 중계동 547-7	1,216,660(368,684)
마포국민학교 주변일대	마포구 도화동 6-1	158,990(48,178)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주변일대	서초구 반포동 19-03	745,256(225,835)

- 소음규제지역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다. (도면생략)

나. 소음규제기준

특 정 공 사 장 비	기준[대시벨dB(A)]	구 격
항 타 기	90이하	
항 발 기	·	
항 타, 항 발 기	·	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
병 타 기	85이하	
착 압 기	80이하	연속최대거리 50m/일 이하작업
공 기 압 축 기	·	공기토출량 2.83㎥/분이상 이동식
프 레 카	·	휴대용 제외
포 크 레 인	65이하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210-1  
의 9필지  
나. 사업규모: 주차장 확장-1,971㎡  
야유회장 -1,108㎡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  
원시설 확충공사)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마. 토지조서: 별첨  
바.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계제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아.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관악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관악구청  
사업시행자주소: 관악구봉천동1570-1  
사업의종류: 관악산 편익시설 확충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성명	주 소	
계				8,981	3,079				
1	신림동	210-1	전	465	465	전	최중현	신림1546-7	
2		-4	"	325	325	"	"	"	
3		-6	"	285	285	"	"	"	
4		812-1	구거	830	830	구거	건설부		
5		산17-1	임야	5,437	14	임야	김종열	신림94-155	
6		산17-1	"	460	460	"	최중현	신림1546-7	
7		산17-6	"	71	71	"	김종열	신림94-155	
8		202	전	882	882	전	이육림	신림198	
9		204	"	138	138	"	최창기	무악11-8부리 502	
10		204-4	"	88	88	"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44호

소음규제지역지정 및 소음규제기준

1. 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1989. 10. 11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가. 소음규제지역

지 역	위 치	면 적㎡ (평)
쌍문동 주택조성단지 주변일대	도봉구 쌍문동 239	691,000(209,393)
중계공공도거관 주변일대	노원구 중계동 547-7	1,216,650(368,684)
마포국민학교 주변일대	마포구 도화동 6-1	158,990(48,178)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주변일대	서초구 반포동 19-03	745,256(225,835)

— 소음규제지역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다. (도면생략)

나. 소음규제기준

특 정 공 사 장 비	기준[데시벨dB(A)]	규 격
항 타 기	90이하	
항 활 기	"	
항 타, 항 발 기	"	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
병 타 기	85이하	
착 람 기	80이하	연속최대거리 50m/일 이 작업
공 기 압 속 기	"	공기토출량 2.83㎡/분이상 이동식
프 레 카	"	휴대용 제외
프 크 레 인	65이하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210-1  
의 9필지  
나. 사업규모: 주차장 확장-1,971㎡  
야 유 회 장 -1,108㎡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  
원시설 확충공사)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시행인가 일로부터 30일  
- 준공: 90. 6. 30

마. 토지조서: 별첨  
바.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계재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아.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관악구청  
사업시행자주소: 관악구봉천동1570-1  
사업의종류: 관악산 편익시설 확충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적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계인 주소명
							성명	주 소	
계				8,981	3,079				
1	신림동	210-1	전	465	465	전	최종현	신림1546-7	
2		-4	"	325	325	"	"	"	
3		-6	"	285	285	"	"	"	
4		812-1	구거	830	830	구거	건설부		
5		산17-1	임야	5,437	14	임야	김중열	신림94-155	
6		산17-1	"	460	460	"	최종현	신림1546-7	
7		산17-6	"	71	71	"	김중열	신림94-155	
8		202	전	882	882	전	이육림	신림198	
9		204	"	138	138	"	최창기	무악11-8부리 502	
10		204-4	"	88	88	"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44호

소음규제지역지정 및 소음규제기준

규정에 외거 소음규제지역 및 소음규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과와 한양구청(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9. 10. 11

1. 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가. 소음규제지역

지 역	위 치	면 적 ㎡ (평)
쌍문동 주택조성단지 주변일대	도봉구 쌍문동 239	691,000(209,393)
중계공공도서관 주변일대	노원구 중계동 547-7	1,216,660(368,684)
마포국민학교 주변일대	마포구 도화동 6-1	158,990(48,178)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주변일대	석조구 판포동 19-03	745,256(225,835)

나. 소음규제지역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다. (도면생략)

다. 소음규제기준

목 정 공 사 장 비	기준[대시벨dB(A)]	규 격
항 타 기	90이하	
항 발 기	-	
항 타, 항 발 기	-	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
병 타 기	85이하	
착 압 기	80이하	연속최대거리 50m/일 이하작업
공 기 압 축 기	-	공기토출량 2.83㎥/분이상 이동식
프 레 카	-	휴대용 제외
프 크 태 인	65이하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210-1의 9필지  
 나. 사업규모: 주차장 확장-1,971㎡  
 야 유 회 장 -1,108㎡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확충공사)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확공: 시행인가 일로부터 30일  
 — 준공: 90. 6. 30

마. 토지조서: 별첨  
 바.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계제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아.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관악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관악구청

사업시행자주소: 관악구동천동1570-1

사업의종류: 관악산 편익시설 확충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계인 주 소 명
							성명	주 소	
계				8,981	3,079				
1	신림동	210-1	전	465	465	전	최중현	신림1546-7	
2		-4	"	325	325	"	"	"	
3		-6	"	285	285	"	"	"	
4		812-1	구거	830	830	구거	건설부		
5		산17-1	임야	5,437	14	임야	김종열	신림94-155	
6		산17-1	"	460	460	"	최중현	신림1546-7	
7		산17-6	"	71	71	"	김종열	신림94-155	
8		202	전	882	882	전	이육범	신림188	
9		204	"	138	138	"	최창기	무악11-8부락 502	
10		204-4	"	88	88	"	"	"	

<p>◎서울특별시고시제441호</p> <p>사료 성분 등록 처리</p> <p>사료관리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p> <p>4. 성분등록내역</p>		<p>1989. 10.</p> <p>서울 특별 시장</p> <p>1. 제조업체명 : (주)미원 2.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동 623-6 3. 대표자 : 김채방</p>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16-267	어린이송아지 2호 (3개월이내,양질조사료 급여시)	이상 17.5	이상 2.0	이하 9.0	이하 9.0	이상 0.6	이상 0.4
16-268	어린이송아지 3호 (3개월이내,저질조사료급여시)	16.0	2.0	15.0	10.0	0.5	0.4
16-269	황유 3-1호 (비유량 16-17kg)	17.0	2.0	18.0	10.0	0.7	0.5
16-270	황유 1-2호 (비유량 18-19kg)	18.0	2.0	18.0	10.0	0.7	0.5
16-271	황유 4-3호 (비유량 20kg이상)	20.0	2.0	13.0	10.0	0.7	0.5
16-272	황유 4-4호 (비유량 30kg이상)	21.0	2.0	18.0	10.0	0.7	0.5
<p>◎서울특별시고시제443호</p> <p>쇠고기 연동 가격 고시</p> <p>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제도에 관한 규정 (농림수산부고시제88-24호'88.9.14)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1989. 10. 11</p> <p>서울 특별 시장</p> <p>1. 쇠고기 연동가격(정육100g 당) 980원 (정육500g 당) 4,900원</p> <p>2. 시행일 : 1989. 10. 부터</p> <p>◎서울특별시고시제450호</p>		<p>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인가</p> <p>1. 건설부고시제594호(87.11.20) 및 서울특별시고시제917호(87.12.22)로 공원조성기본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675호(89.8.8.)로 공람공고된 관악산 자연공원(공원시설) 확충공사에 대한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1989. 10. 10</p> <p>서울 특별 시장</p>					

<p>◎서울특별시고시제454호</p> <p>도시계획사업(지하철도,부대시설)시행 허가변경</p> <p>1. 서울특별시고시제79호(81.3.23)로 도시 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 고시제331호(81.9.10)로 실시계획 인가된 지하철 신정기지 인입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제803호(88.9.30) 및 제237호(89.5.18)로 일부구간의 노선이 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 허가에 앞서 서울특별시공고제539호(89.6.23)로 공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고시제343호(89.7.19)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변경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기 토지 및 건</p> <p>다. 사업시행규모</p> <p>○ 인 입 선</p>		<p>물의 보장, 부대시설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과 동법시행령 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하고 동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1989. 10.</p> <p>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지</p> <p>○ 양천구 신정동(312,215,249번지 일대)</p> <p>○ 구로구 신도림동(332,330,344번지 일대)</p> <p>○ 구로구 고척동(31번지 일대)</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p> <p>○ 지하철 2호선 제2차량기지 및 인입선 건설공사</p>		
시 설 명	폭 (m)	연장 (m)	기 점	종 점
지하철도차고인입선	10 - 30	2,250	영등포구 도림동 330	양천구 신정동 297
<p>○ 차량기지 : 249,795㎡(75,560평)</p>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p> <p>○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p> <p>○ 설명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한 진 회</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p>		<p>○ 착수년월일 : 1981년 9월10일</p> <p>○ 준공년월일 : 1991년 12월30일</p> <p>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내용) : 별 함</p> <p>사. 기타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582-9492)</p>		



토 지 조 서

소재지: 구로구 신도림동

당					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자 주소 성명						관계자 주소 성명		
271-11	공장	523	구로구신도림동 271-11	박 종 업		271-11	공장	523	용산구서빙고동241-21 신동아아파트12-302	박 종 업	
-37	전	6	수원시영화동339	박 노 영		-37	전	6	수원시북수동171	박 노 영	시세적납안류
										서울특별시	
-62	잡	542	구로구신도림동 271-11	박 종 업		-62	전	542	용산구서빙고동241-21 신동아아파트12-302	박 종 업	
271-89	대	161	영등포구문래동4가 12-33	김 지 순		271-89	대	161	영등포구문래동4가 12-33	김 지 순	
									문래2동새마을금고		근지당권
325-15	잡	4	강남구개포지구107 부림17호	변 영 희	325-6	325-15	잡	4	강남구포이동221-9	변 영 희	
-19	전	158	"	"	326-1	-19	전	158	"	"	
328-40	잡	149	강동구천호동432-4 성창빌딩나동302호	장안개발(주)		328-40	잡	149	강동구천호동431-4 성창빌딩나동302호	장안개발(주)	
									강남구논현동71-2	한국토지개발공사	

제1452호 시 부 1989.10.20 62-41

당 호					번 경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자 주소 성명						관계자 주소 성명		
330-16	대	11	구로구신도림동 336-16	김 달 용		330-16	대	11	구로구신도림동 330-16	추옥출 김현중 김영미 김영희 김영애 김효중	
330-89	대	73	"	"	330-16	330-89	대	73	"	"	
344-63	대	1	"	"		344-63	대	1	"	"	
344-26	대	16	중구올지토1가69	제일제당(주)		344-26	대	16		서울시	
						344-39	잡	10	서대문구냉천동4 강남구서초동1303-33	공익기술 개발(주) 제일생명 보험(주)	지상권 근저당권
						344-57	대	2	서대문구냉천동4 강남구서초동1303-35	공익기술 개발(주) 제일생명(주)	지상권, 근저당권
349-35	잡	2	종로구인사동194-27	성신양회 공업(주)	349-2	349-35	잡	2	종로구인사동194-27	성신양회 공업(주)	지하

69-42 제1452호 시 보 1989.10.20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자 주소 성명						관계자 주소 성명		
131-41	대	21	양천구신정동131-41	이종구		131-41	대	21	양천구육동727-8	최병선	
-66	"	56	양천구신정동131-66	정순득		-66	"	56	양천구신정동131-66	정현복	
-264	"	75	강동구명일동42 우성아파트9동102호	유병완	131-140	-264	"	75	양천구신정동144	유학근	
-265	"	8	강동구명일동131-57	신지철	131-126	-265	"	8	영등포구당산동4가28 신우아파트7동204호	안건영	
-270	"	75	경기도안성군양서면 노곡리181	김창복	131-124	-270	"	75	강서구화곡동802-18	김은재	
-272	"	56	성남시중동3748-24	박양귀	131-40	-272	"	56	성남시태평동3740-31	박양귀	

소재지: 구로구 신도림동												
당 초					변 경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평)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인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271-11	세멘트벽돌 스레트		33.6	용산구이촌동 301--160	박종엽	271-11	세멘트벽돌 스레트	공장 담장	135㎡ 50m	용산구서빙고동241-21 신동아아파트12동 302호	박종엽	
271-25	연과조명육 개(2층)		21.8	구로구신도림동 271-25	세광알 미남(주)	271-25	연과조명육 개(2층)	공장 담장	160㎡ 60m	구로구신도림동 271-25	세광알 미남(주)	

1452호

1989.10.20 2-43

당 초				변 경				비 고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평)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평)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324-6	세멘트벽 스테이트층		85.5	용산구용문동	박우엽	324-6	세멘트벽 스테이트층		360.0	용산구용문동	박우엽	
				38-126						강서구화곡동816-19	허문희	
								공장		마포구망원동436-2	고익호	
소재지 : 양천구 신정동												
당 초				변 경				비 고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평)	소유자 주소 성명		지 번	구 조		주 용 도	전 평 (평)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31-40	세멘트벽조		8.15	양천구신정동	김기영	131-40	세멘트벽조	주택	26.94	성남시태평동 2740-31	박양귀	근저당 협동조합 설정
				131-40			빛와음			성남시신홍동5976	성도신용	
-41	세멘트벽조		8.6	신정동131-41	이종구	131-41	세멘트벽조	주택	28.43	양천구신정동 131-41	김기석	
-42	"		16.27	신정동131-42	안순용	-42	"	"	53.79	양천구신정동144	이상록	
						-65	"	"	21.88	양천구신정동131-65	방간란	
131-66	세멘트벽조		6.62	신정동131-66	정현득	130-66	"	주택	21.88	양천구신정동 131-66	정현득	
-67	"		7.60	신정동131-67	김기석	-67	"	주택	25.12	양천구신정동 131-67	김기석	
								릿철포				

62-44 제1452호 시

1999.10.20

등				초				번				경	
지번	구	조	주용도 (종류)	소유자 주소 성명		지번	구	조	주용도 (종류)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관계인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23	세펄브릭조 및와중		주택	26.45	용산구용산동2가 1-1464	홍순옥	제145호 사
						-124	"	"		26.45	강서구화곡동 802-18	김은재	
						-125	"	주택및 점포		26.45	양천구신정동 131-125	최성혜 김영삼 김영임 김동기	
						-126	"	주택		26.45	영등포구당산동4가 28신우아파트7동204	안진영	
						-237	"	"		53.79	양천구신정동 131-237	김정섭	
						144 제1호	"	"		39.34	성동구자양동 625-7	최종욱	제 1989.10.20
						144 제2호	"	"		31.40	동대문구합심리동 73-4	박태원	
						144 제5호	"	"		73.72	광주시동구동명동 37-3	이종원	
						147-11	"	"		38.67	노원구상계동주공 아파트2단지218 -905호	안선경	제 62-45
						147-11 제3호	휴역물	"		29.09	양천구목동904 목동아파트 414.903호	전정순	

제145호  
사  
제  
1989.10.20  
제  
62-45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836호

품질관리 등급사정 취소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장품질관리 등급 사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1989. 10. 10

서울특별시

아 래

1. 업체명	서지상사	(주)원중산업	원성사
2. 대표자	변종만	김덕성	김순무
3. 소재지	동대문구 답십리 동 463-1	성동구 성수2가동 289-302	마포구 신록동 6-1
4. 사정등급	2급	2급	2급
5. 사정번호	G가 2-331	G가2-60	G가 2-222
6. 사정상품	공 책	완 구(봉제)	공 책
7. 취소일자	'89.10.	과 동	과 동
8. 취소사유	폐 업	과 동	과 동

●서울특별시공고제837호

품질관리 등급의 표시정지 처분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3조 및 공산품 품질 관리 등급제 운영요령 제20조 1항에 의거, 등급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한다.

1989. 10. 10

서울특별시

1. 사정 공장명: 동성전기(주) 본사공장
2. 사정 등급: 1등급
3. 사정 번호: A가 1-043
4. 사정 상품: 자동차용 점화 코일
5. 표시정지기간: 공고일로부터 3월
6. 처분 사유: 사정명령 미이행

●서울특별시공고제838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9. 10. 10

서울특별시

다 음

1. 업체명	신아공업(주)		
2. 대표자	유원무		
3. 소재지	구로구 독신동 1007-14		
4. 규격번호	5. 규격명	6. 종류/등급	
KSB7501	소형블루트럼프	-	
KSB6318	양쪽홀입원심럼프	-	
7. 처분사유	폐업		
8. 취소일자	'89. 10. 10		

◎서울특별시공고제8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3	3	12	580	신교동	육인동	일부폐지
변경	"	"	"	"	260	신교동 6의27	육인동	(B=12M, L=320M)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89.10.8. - 1989.10.22.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1989. 10.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854호

전기공사업면허실호  
 전기공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면허 실효처분하고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10. 16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실효사유	실효일자
1070	동원전기	종로구 연건동 190-30	박명식	제2종 전기공사업폐지	89. 10. 16

구 고 시

◎송파구고시제10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10. 13

송파구청장

- 다 음 -
1. 사업명 : 풍납동 현대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현대그룹 제2직장주택조합의2개조합
  3. 사업시행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 송파구 풍납동 299-1외4필지
    - 나. 대지면적 : 5,128.00
    - 다. 건축연면적 : 12,008.49
    - 라. 규모 : 아파트6-13층 1동 104세대
  4. 사업시행기간 : 89. 9. - 91. 4

●송파구고시제17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10. 13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명: 풍납동 조합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풍납동 현대아파트 직장주택조합의 8개조합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송파구 풍납동 340-1의5필지
  - 나. 대지면적: 27,038.40㎡ (공공공지1,000㎡ 별도조성)
  - 다. 건축연면적: 77,538.64㎡
  - 라. 규모: 아파트 15-20층 6동 708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 9. -1991. 6. 30

●동작구고시제2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준공

1. 동작구 고시제8호(89. 1. 27)로 도시계획사업(도로)사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준공처리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3조,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 설	하 수 도	중랑구 신내동 410-4~517-17	B=4 L=630	

○도면: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9. 10. 12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동작구 대방동 51-12 ~대방동69
-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용산구 원효로4가113-25 현대자동차서비스(주)양대
- 라. 사업의규모: 폭15m, 연장74m(지하차도22m포함)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일: 착수일89. 1. 27  
준공일89. 6. 30

●중랑구고시제86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6호(89. 10. 13)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410번지~517번지일대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상에 명시코져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0. 18

중 랑 구 청 장



**◎구로구고시제9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972호(1988. 12. 12)로 변경결정 및 동 고시 제1036호(1988. 12. 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신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하엿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0. .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구로구 중동 107-5번지의 2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한평여자 상업학교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 규모  
-사업시행면적: 17,924㎡  
-건축면적: 1,141.68㎡  
-건축연면적: 6,544.28㎡

라. 사업시행자: 강서구 화곡동 477-1 학교법인 인연학원 이사장 전인권

다.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89. 10.  
· 준공예정일-90. 9.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 및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	비고
구로구 중동	104-1	담	776	강서구화곡동477-1 학교법인 인연학원	(주)대우 가동기	
"	105-1	담	836	"	"	
"	106-1	"	1,763	"	"	
"	107-4	"	1,304	"	"	
"	107-5	"	1,612	"	"	
"	107-6	"	431	"	"	
"	108-5	"	773	"	"	
"	108-7	"	2,167	"	"	
"	108-8	"	737	"	"	
"	109-1	"	1,582	"	"	
"	110-1	"	3,023	"	"	
"	76-1	전	132	서대문 용암275-2 나 은 암		
"	98-13	대	24	강서구화곡134-13 김 병 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	비고
구로구 공동	98-14	전	482	서대문창전동29-65 최재현	가등기 및 지상권 양경숙: 관악 구상도동321-32 유대준: 성북구 하월곡동27-111	
"	101-3	"	16	구로구공동산10삼언길		
"	101-4	"	78	구로구공동81 권희영		
"	103-1	"	860	동대문구신내110임수근		
"	103-5	"	214	구로구 공동산10삼언길		
"	103-6	답	138	구로구공동21 권희영		
"	103-7	답	495	강남구대치동813-13김현균		
"	252-1	국	122	국유지		
"	252-2	"	308	"		
"	252-4	"	18	"		
"	252-5	"	2	"		
"	264-1	도로	31	"		
계			17,924			

●서초구고시제38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9. 10. 5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자: (주)대우 제2직장주택조합 대표 조합장 정용기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방배동 562-1

외3필지

- 나. 대지면적: 6,827㎡
- 다. 건축면적: 1,442.37㎡
- 라. 건축연면적: 9,890.67㎡
- 마. 건설규모: 아파트6-9층 2동52세대
- 바. 사업시행기간: 1989.10 - 1990.12.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5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1. 성동구 고시 제69(88.11. 3)호로 도시 계획사업(학교)변경 시행 허가된 다니엘 학교에 대하여 사업완료 되었 기 도시계획법 제57조의2및 8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p>2. 관계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경비과 (450-138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9. 29</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성동구 광장동533-1일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사업의명칭: 다니엘 학원 시설 확충 (작업장)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대지: 7,060㎡                  기존연면적: 2,671.85㎡                  변경연면적: 3,155.15㎡(증522㎡)                  라. 사업시행자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533번지                  성명: 사회복지법인 구령희 대표 이종성                  마. 사업규모: 착수년월일: 89. 10. 28                  준공년월일: 89. 5. 30                  가. 사업개요</p>	<p>2. 관계 도서는 중랑구도시계획(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서구공고제57호</b></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및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항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 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업시행지</th> <th style="width: 15%;">사업종류및사업명칭</th> <th style="width: 10%;">규 모</th> <th style="width: 15%;">사 업 기 관</th> <th style="width: 15%;">결정고시일자</th> <th style="width: 10%;">지적승인</th> </tr> </thead> <tbody> <tr> <td>강서구가양동 187번지일대</td> <td>가양동187주변도로 개설공사</td> <td>B=8M L=100M</td> <td>인가일로부러 90.12.31까지</td> <td>서고85 (77.3.29)</td> <td>서고86 (77.3.29)</td> </tr> </tbody> </table>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 모	사 업 기 관	결정고시일자	지적승인	강서구가양동 187번지일대	가양동187주변도로 개설공사	B=8M L=100M	인가일로부러 90.12.31까지	서고85 (77.3.29)	서고86 (77.3.29)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 모	사 업 기 관	결정고시일자	지적승인								
강서구가양동 187번지일대	가양동187주변도로 개설공사	B=8M L=100M	인가일로부러 90.12.31까지	서고85 (77.3.29)	서고86 (77.3.29)								
<p>나.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다.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생략                  라. 위치도및 계획평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강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토목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 서 구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b>◎중랑구공고제84호</b></p> <p style="text-align: center;">불법공산품 판매및 진열 금지공고</p> <p>공산품 품질관리 및 제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산품 품질표시 미이행 상품에 대한 판매 및 진열을 위한 진열보관 운반의 금지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10. 13</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랑 구 청 장</p>												

○공고내용					
상 품 명	판매업소	소 재 지	금 지 사 유	금 지 유 청	금지년월일
남대성크	백조성크	면목동504-21	품질미표시 및 치수 (두께)미달 (두께15미리아하)	판매 및 판매물 위한 전열보판 운반금지	89.10.13
동신산업	한일성크	면목동498-27	품질미표시	"	"
민영성크	백곰표 민영주방	상봉동113-2	"	"	"

부침 : 이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람개요-

●구로구공고제100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2호(89. 8. 14) 및 구로구 고시 제84호(89. 8. 28)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5호의 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10. 13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흥동 424-2~시흥동산71-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 하수도), 시흥동932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3개소 도로포장공사
3. 사업규모 : 도로포장 : B=6M L=100M  
하수도 : D=600mm L=10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9. 12. 31
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토지 및 건물조서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1	구로구시흥동 산71-54	임	11		강동구 가락동 1-2가락3차 현대아파트33동 1303호	김 춘 성	
2	구로구시흥동 424-10	묘	103		강동구 가락동 가락3차현대아파트 33동1303호	김 춘 성	
3	구로구시흥동 424-4호	전	88		구로구 시흥동 424-3	송 형 섭 외 1 인	
4	구로구시흥동 424-11호	전	86		은평구 갈현동 454-26	김 춘 성 외 1 인	
5	구로구시흥동 산71-53호	임	118		강동구 가락동 1-2가락3차 현대아파트33동 1303호	김 춘 성	
6	구로구시흥동 산71-52호	임	184		용산구 이촌동 203-2	손 이 환 외 1 인	
7	구로구시흥동 932-41호	대	98		가리봉동152-18회	최 학 범	
계			599.8				

<p>◎영등포구공고제107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인개각사용</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인규칙 제5조 에 의거 우리구 대림 제3동장 관인(일 반사무용)을 개각 사용 승인하고 동규</p>	<p>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0.</p> <p style="text-align: right;">영 등 포 구 청 장</p> <p>1. 관인명: 대림 제3동장인 2. 사용개시일: 1989. 10. 16</p>
---	---

3. 관인인영			
신 인 영		구 인 영	
공인명	대림 제3동장 직인	공인명	대림 제3동장 직인

●은평구공고제17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6호(89.8.24)로 시설결정되고 은평구 고시제20호(89.9.7)로 지적승인된 용암동 601의69-용암동 601의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10. 4

은 평 구 청 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명: 용암동 601의69-용암동 601의6간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용암동601의69-용암동 601의6간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4m  
L=80m(도로)

라.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청(은평구청장)

마.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 89.10-90.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건물조사: 별첨

●은평구공고제17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6호(89.8.24)로 시설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호(89.9.7)로 지적승인된 구과발역세권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람하며 토지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10. 4

은 평 구 청 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명: 구과발 역세권 주차장 조성공사

나. 위 치: 진관내동532의14와10필지

다. 사업규모: 주차장 A=4977㎡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청(은평구청장)

마.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 89.10-90.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건물조사: 별첨

●은평구공고제17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6호(89.8.24)로 시설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호(89.9.7)로 지적승인된 수색로-향동리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인 수색동296의1-298의3안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트목과에 비치하며 토지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10. 6.

은 평 구 청 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명 : 수색로-향동리간 도로개설 공사

- 나. 위치 : 수색동296의1-298의3간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7.7m  
L=340m(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 마.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 89.10-90.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및 건물소재 : 별첨

사업소고시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고시제31호

선박운항허가

한강 구역내 선박 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89. 10.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선박운항허가내용

점용 수허가자	점 용 위 치	점 용 목 적	점 용 내 역
(주)삼새봉 임 약 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동 190번지선 한강	수상스키(모타보트) 경영을 위한 선박 운항	선박(모타보트) 2척

○허가기간 : 89. 10. 1-89. 12. 31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2호

하천의 점용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됨받은자	
						주 스	성 명
89.10.7	영등포구 여의도 동10,강동구신원 동7,성동구성수동 2가158번지선	하천	3.93㎡ (개소당 1.31㎡)	이동식 음식점 편의시설	89.10.7- 90.10.6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주)거원개발 윤재철 안승학

<p>●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 시제33호</p> <p>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p>	<p>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p>
---	---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9.10.11	영등포구여의도 동85-1, 송파구 잠실동19, 성동구 성수2가130번지 신(한강)	하천	5.4㎡ (개소당 1.8㎡)	이동식음 식점 편의시설	89.10.11- 90.10.10	인천직할시 남동 구산1-2번지 대리인 용산구동부이촌동 300-157	류복수 이동훈

**사 령**

◎1989년10월4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및 파견

령제380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유시용	정부합동민원실파견 (89.10.4-91.4.3)	증 구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	물가지도과	"
김중근	내무국 정부 합동민원실파견( " )	주택기획과	"
최영규	중 랑 구	내 무 국	"
조동수	송 파 구	"	"
송요술	용 산 구	"	"
허권영	서울특별시의회조직위원회, 파견해제 내무국	인 사 과	"
이종민	" 기술심사담당관	내 무 국	지방기계기사
정관봉	"	동 작 구	지방행정주사보
방광호	강 남 구	자동차관리(사)	"
홍승빈	송 파 구	양 천 구	지방행정서기
김은옥	강 서 구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용 산 구	"



6급이하 공무원 직위해제				령 제38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송택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89. 10. 4부터 '90. 1. 3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	북부위생처리장	지방기계기사	
김진현	"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영	"	"	지방화공기원	
5급공무원 전보및 파견				령 제38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종행	내무국 경우합동민원실파견 ('89. 10. 4 - '91. 4. 3)	운수 1과	지방행정사무관	
손홍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파견해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1989년 10월 5일자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38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창용	북부위생처리장	감사담당관	지방기계기사	
4급 기술직공무원 직위해제				령 제38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안종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89.10.5-'90.1.4 내무국 대기근무)	증량하수처리장장	지방공업기정	
4급 공무원 전보				령 제38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창진	증량하수처리장장에 보함.	탄천하수처리장장	지방공업기정	
4급 무대리				령 제38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정복	탄천하수처리장장 직무대리	가스과	지방화공기 과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령 제38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욱	관재과 파견('89. 10. 5-12. 31)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최승석	업무과 (부정급수조사반 요원)파견 ('89. 10. 5 - 12. 31)	구로구	"	
김길환	"	동대문구	"	
방철국	"	송파구	지방행정주사보	
김규만	"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윤진한	건설행정과 파견 ('89. 10 5 - 12. 31)	건설자재사업소	"	
안준모	"	"	"	
◎1989년 10월 6일자 5급공무원 직위해제				령 제38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도제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89. 10. 6부터 '90. 1. 5까지 내무국 대기근무)	건설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989년 10월 7일자 5급공무원 전보				령 제38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태욱	한강공원관리사업소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고인석	"	서대문구	지방토목기과	
◎1989년 10월 11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 제39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육근	북부 위생처리장	은평구	지방행정주사보	
박극현	"	자동차관리(사)	지방기계기사보	
윤석경	"	동작구	지방화공기원보	
지방별정직 4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39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중암	지방별정직 4급상당공무원에 임함. 세종문화회관 부대공연담당관에 보함.	신규		

서울특별시감

◎1989년 10월 12일자      령 제392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3부 지방기계과                      윤 영 수 기계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2과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정비계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장	
◎1989년 10월 13일자                      7급 기술직공무원 진보                      령 제39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고 관 식	동 작 구	도 통 구	지방건축기사보
◎1989년 10월 14일자                      6급공무원 면직                      령 제39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세 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설행정과	지방행정주사
◎1989년 10월 16일자                      5급공무원 파견                      령 제39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영 춘	국무총리행정조정실 파견 ('89. 10. 16~'90. 6. 30)	치 수 과	지방행정사무관
7급공무원 징계                      령 제39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방 덕	불 문 (경고)	새마음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최 정 용	불 문 (경고)	관 재 과	"
지방별정직8급상당 공무원 의원면직.                      령 제39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병 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별정직 8급상당
이 용 기	"	"	"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39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신현수	경찰국교통과 (교통교육지도관)	지방별정직 6급상당	신규	
김병복	보건환경연구원 (공해측정기사)	지방별정직 7급상당	"	
이용기	"	"	"	
고한성	"	지방별정직 8급상당	"	
김종주	"	"	"	
이용진	"	"	"	
강미혜	"	"	"	
원경범	노원부녀복지관(훈련교사)	"	"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39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인근	내무국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과	
해외박사학위과정 특별훈련 파견명령				
가. 훈련대상자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해외훈련경력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	지방토목기과	이인근	'57. 8. 6	'85. 8. 25 - '87. 8. 24 영국시티대학교 대형건설공사기초공법(국비)
나. 훈련개요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분야	훈련비부담
영국시티대학교 토질공학연구소	박사학위 과정	'89.10.16 - '91.10.15(2년)	토질및 기초공학	훈련기관 장학금
다. 인사처리: 파견				

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교통기획과	서기관	안종관	프랑스 영국 홍콩	89.10.11 -10.20 (10일간)	시비	공공용지하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관련 외국사 제비교시찰				
"	지방 행정주사	이성배								
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목영만 외3명	일본,대만, 대만,홍콩 싱가폴	89.10.17 -10.28 (12일간)	시비 (\$9,784)	인간계도비교연구				
송파구	"	이보규 외7명					89.10.18 -10.24 (7일간)	송파구부담	송파구외국도시행정비교 시찰	
중랑구	"	정준상 외8명 (명단별첨)								89.10.16 -10.21 (6일간)
공무 국외여행 명령 사항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소 속	직 명	성 명								
행정과	행정사무관	목영만	인간계도비교연구	일 본 대 국	89.10.17 -10.28 (12일간)	시 비 (\$9,784)				
"	행정주사보	박승천								
법무담당관	행정주사	김만수								
전산담당관	"	김기성								
송파구 총무과 재무과 기획감사과 사회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풍납1동 석촌동	행정사무관 " 행정주사 " 건축기사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행정서기보	이보규 서진홍 문홍범 천희광 박인섭 심우원 주영관 하태훈	송파구 외국도시 행정비교시찰	대 국 홍 콩 싱 가 폴	89.10.18 -10.24 (7일간)	송파구 (\$14,026)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소속	직명	성명				
중랑구 산업파 목1동사무소 기획감사과 재무과 건설생활과 토목과 보건소 망우3동 면목1동	행정사무관 별정 5급 행정주사 · · · · · · · ·	정준상 정수선 김병선 조근호 최봉호 안상범 정태현 연수명 최인수	중랑구 외국도시 행정비교시찰	싱가폴 홍콩 대륙	89.10.16 -10.21 (6일간)	중랑구 (\$14,717)
<b>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b>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시립운동장 건설생활과	서기관 행정사무관	신중식 김정근	일본,독일	89.10.17 -10.30 (14일간)	시비 (\$6,730)	체육부주관 선진국 체육 시설활용제도 연구
<b>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b>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전자계산소 전산담당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명단별첨)	심오택 외2명 유차수 외4명	프랑스 일본	89.10.27 -11A(9일간) 89.10.31 -115(6일간)	한국유니시스(주)부담 · ·	유니시스 전산기 임대계 약 조건에 따른 해외 연구
<b>공무 국외여행 명령 사항</b>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소속	직명	성명				
전자계산소 · · 전자계산소 인사과 종로구 전산담당관 전자계산소	행정사무관 전산처리사 행정서기 · · · · · · ·	심오택 신형수 이승수 · · · · · · ·	유니시스전산기임대 계약조건에 따른 해외 교육 · · · · · · · ·	파리 · · 일본	89.10.27 -11.4 (9일간) 89.10.31 -11.5 (6일간)	한국유니 시스주식 회사 부담 · · · · · · · ·
서울특별시						